

목 차

● 조 려

-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제1985호 :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2
-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제1986호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4
-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제1987호 : 서울특별시 양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 6
-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제1988호 :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사회진출 첫걸음 지원 조례 9
-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제1989호 :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13
-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제1990호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15
-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제1991호 :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9
-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제1992호 : 서울특별시 양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26
-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제1993호 : 서울특별시 양천구 간호사 등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 31
-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제1994호 :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35
-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제1995호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8
-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제1996호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0

● 훈 령

- 서울특별시 양천구 훈령 제214호 : 서울특별시 양천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정 전부개정훈령 42

● 공 고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5-2296호 : 염창역(목동 523-45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재공람공고 59

조 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제1985호**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2월 18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공무원” 이라 한다”를 ““공무원”이라 한다”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사회관계망서비스”로 한다.

제12조제5항 및 제6항 중 “얻을”을 각각 “받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신규공무원의 정규임용 시 특별휴가(1일)를 부여하여 초기적응을 지원하고 사기를 진작하며, 조례 용어 및 문구를 일부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보해제특별휴가를 신설함.(제12조)

나. 조례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함.(제2조, 제9조, 제12조)

조 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제1986호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2월 18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3호 중 “배우자”를 “그 가족(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중 1명에 한함)”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지원 확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직원복지 증진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양천구 소속 공무원 및 그 가족 중 1명으로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과 건강검진비 지원을 확대함.(제7조)

조 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제1987호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2월 18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서울특별시 양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양천구민”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직계가족”을 “직계친족”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을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을 “「범죄피해자 보호법」 ”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법인에”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로 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범죄피해자(「형법」 제156조에 따라 무고로 처벌받은 범죄에 의해 피해를 당한 사람도 포함)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범죄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사업
2. 범죄피해자 주거지원 및 취업 등 자립 지원사업
3. 범죄피해자 심리상담 및 치료회복 지원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무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서 명시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범죄피해자에 무고로 처벌받은 범죄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을 명시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제7조제3항)

조 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제1988호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사회진출 첫걸음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2월 18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사회진출 첫걸음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청년 구직자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퍼스널 컬러 진단”이란 생기가 돌고 활기차 보이도록 연출하기 위해 청년 구직자 본인 신체의 색과 어울리는 색을 찾는 것을 말한다.
3. “이미지 메이킹”이란 청년 구직자가 취업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개성과 장점을 외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인상을 의도적으로 만들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구직자들의 사회진출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창의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사회진출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제3조에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 구직자의 사회진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회진출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 구직자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모의 면접 등 취업 관련 컨설팅 지원
2. 퍼스널 컬러 진단 등 이미지 메이킹 지원
3. 발음교정 등 면접에서 말하기 컨설팅 지원
4. 자기소개서 첨삭 컨설팅 지원
5. 취업용 증명사진 촬영 지원
6. 그 밖에 청년 구직자 사회진출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 구민의 선호도와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중 국가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 조례와 유사한 제도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구민 홍보)** ① 구청장은 청년 구직자의 사회진출 지원 사업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와 정보 제공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청년 구직자들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공모전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청년 구직자들이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데 필요한 사회·경제적 기반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제2조)

나. 청년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다. 사회진출 지원사업의 범위 및 지원 제외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라. 사회진출 지원사업에 대한 구민 홍보 및 청년 수요 반영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조 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제1989호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2월 18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1.5억원”을 각각 “1억5천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개정이유

2025. 12. 31.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 시한을 2028. 12. 31.까지 연장하고 일부 문구를 정비하여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몰이 도래한 구세 감면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제10조)

나. 조문 일부 문구를 정비함.(제10조)

- 과세표준 1.5억원 →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조 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제1990호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2월 18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의사소통 증진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의 시각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현장영상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가 설립한 공단

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현장영상해설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문화·여가생활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사업)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 등에 현장영상해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현장영상해설을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등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시각장애인
2. 공공기관 등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

③ 구청장은 관내 국·공립 기관이나 기업체 등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현장영상해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인, 기관, 단체 등에게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기업체 및 관내 국·공립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표창)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개인, 공무원, 법인, 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정이유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문화·예술·체육 등 각종 행사에서 현장해설을 활성화·지원함으로써 정보 접근성 향상과 사회 참여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 ~ 제4조)

다. 현장해설 활성화 사업 및 지원 (제5조 ~ 제6조)

라.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표창 규정 (제7조 ~ 제9조)

조 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제1991호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2월 18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하고,”를 “정하고, 서울특별시”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수탁자”라 함은”을 ““수탁자”란”으로 한다.

제3조 중 “청소년 활동”을 “청소년활동”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청소년 육성 정책”을 “청소년육성 정책”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구민”을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계몽”을 “교육”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청소년

육성”을 “청소년육성”으로, “하는”을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을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양천구의회”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로, “청소년지도위원”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청소년지도위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청소년”을 “그 밖에 청소년”으로 한다.

2. 교육과장

제11조제1호 및 제2호 중 “청소년 육성”을 각각 “청소년육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청소년 수련시설”을 “청소년수련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을 “지역청소년육성시책”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4.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지원

6. 청소년상 수상자 선정 심사

제12조 단서 중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경우에는 해당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사망하였을 때”를 “사망한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손상 또는”을 “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를 “직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원이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17조 중 “1인을 두되,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를 “1명을 두며, 간사는 가족정책과장이 된다”로 한다.

제18조 본문 중 “지급 할”을 “지급할”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청소년지도위원”이라 한다)”을 “청소년지도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역주민”을 “구민”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도위원”을 “청소년지도위원”으로 한다.

제20조 중 “있으며, 위원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한다”를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해당되는 사람”을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를 “질병 등”으로, “사람”을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중에”를 “중”으로, “연루되었을 때”를 “연루된 경우”로 한다.

4.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22조제1항제4호 중 “청소년유익환경”을 “청소년 유익환경”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청소년유해환경”을 “청소년 유해환경”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저소득 청소년 가정의 사회적·경제적 지원 등

제25조제1항 중 “청소년지도위원”을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위원”으로, “관계 기관에 체계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을 “관계기관에 체계적으로 건의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도위원”을 “청소년지도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및 부회장 각 1명을 두되, 호선에 의해”를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며, 호선으로”로 한다.

제26조제2항제2호 중 “업무 협조”를 “교류 활동”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위원회 구성)”을 “(참여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및 부위원장 각”을 “1명과 부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연령·지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를 “위촉한다”로 한다.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연령·지역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

도록 해야 한다.

제31조의 제목 “(위원회의 운영)”을 “(참여위원회의 운영)”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각 부문”을 “각 호”로 한다.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7조 단서 중 “관하여”를 “한하여”로 한다.

제48조 중 “간사는”을 “가족정책과장은”으로, “심사위원회에 심의 의뢰하여야”를 “제11조에 따라 육성위원회에 심사 의뢰를 하여야”로 한다.

제49조의 제목 “(수상자 결정)”을 “(수상자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심사위원회”를 “육성위원회의”로, “결정한다”를 “선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수상대상”을 “수상 대상”으로 한다.

제50조를 삭제한다.

제51조 중 “별표 2과”를 “별표 2와”로 한다.

제52조제2항 중 “지역주민의”를 “구민의”로, “지역주민도”를 “구민도”로 한다.

제53조제2항제1호 중 “관계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한다.

제57조제2항 중 “위탁하는데”를 “위탁하는 데”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및 「서울시 청소년수련시설 예산편성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59조의 제목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를 “구의회”로 한다.

제63조제4항 중 “관계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72조제1항제1호 중 “관계법규”를 “관계 법령”으로 한다.

제73조 중 “청소년 정책”을 “청소년정책”으로 한다.

제7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유사 기능의 청소년상심사위원회 심의기능을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위촉대상을 현행화함.(제10조제3항)

나. 청소년상 수상자 선정 심사 기능을 신설함.(제11조제6호)

다. 청소년상심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함.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제50조)

라. 청소년상심사위원회 관련 사항을 정비함.(제48조부터 제49조까지)

마. 그 밖에 조문의 미비사항을 보완·수정함.

조 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제1992호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 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2월 18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서울특별시 양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안전보건지킴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 관내 사

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그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1. 양천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양천구가 설립한 공단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양천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환경 취약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체.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 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 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업종별 실태자료 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종별 대책
4.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안전보건지킴이) 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성)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서울 지방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 주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위한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제1조 ~ 제2조)

나. 조례의 적용 대상 기관 및 사업장의 범위를 규정함.(제3조)

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제4조)

라.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제5조)

마. 산업재해 예방 대책의 수립 및 그 주요 항목을 규정함.(제6조)

바.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의 범위를 규정함.(제7조)

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의 운영, 위촉 요건 및 역할을 규정함.(제8조)

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제9조)

조 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제1993호**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간호사 등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2월 18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서울특별시 양천구 간호사 등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재 보건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 근무 유도 및 숙련 인력을 확보하여 간호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기관 등”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소재하는 「간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의료기관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2. “간호사 등”이란 보건의료기관 등에 근무하는 「간호법」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간호사, 같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간호사 등의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간호사 등의 권익증진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2.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간호사 등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간호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일반 현황, 근무환경 및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사업) ① 구청장은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2. 간호사 등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3. 그 밖에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재 보건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여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대한 목적과 정의에 관해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해 규정함.(제3조)

다.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행계획, 실태조사 및 관련 사업을 규정함.(제4조 ~ 제6조)

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함.(제7조)

조 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제1994호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2월 18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노인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구강보건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인 구강보건사업”이란 노인 구강질환의 예방·진단,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관리와 불소도포 등의 지원으로 구강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강보건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균등하고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연구, 전문 인력의 양성 등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구강보건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노인 구강보건사업의 지원)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강보건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불소도포 및 치아세정 등 지원
2. 구강검진 및 개별 구강보건교육 제공
3. 그 밖에 구강건강의 유지·증진 및 구강기능의 회복·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자료요청) 구청장은 효율적인 노인 구강보건사업을 위하여 관련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후관리)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노인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할 수 있다.

제8조(지원 및 협조) 구청장은 노인 구강보건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 등에 필요한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구강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구강질환 예방과 구강보건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노인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노인 구강보건사업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노인 구강보건사업 추진에 관한 책무를 규정함.(제3조)

다. 노인 구강보건사업의 지원 대상을 규정함.(제4조)

라. 노인 구강보건사업의 지원 범위를 규정함.(제5조)

조 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제1995호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2월 18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제3조제3항 관련)

구 분	지 급 액
월 정 수 당	월3,075,030원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5조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2026년도 월정수당을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월정수당을 월3,075,030원으로 함.(별표2)

조 려

◎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제1996호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2월 18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2호 중 “배우자”를 “그 가족(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중 1명에 한함)”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지원 확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직원복지 증진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양천구의회 소속 공무원 및 그 가족 중 1명으로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과 건강검진비 지원을 확대함.(제7조)

훈 령**◎ 서울특별시 양천구 훈령 제214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정 전부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5년 12월 18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서울특별시 양천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정 전부개정훈령

서울특별시 양천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와 소속기관 구성원 등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각 목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톱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를 말한다
4. “2차 피해”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가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아.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차. 그 밖에 피해자와 해당 피해의 신고자, 피해자의 조력자 및 대리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와 소속 기관 구성원(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과 고용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적용되며, 구의 통제범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자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이 지침에 따른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의 보호는 피해자뿐 아니라 해당 피해의 신고자, 피해자의 조력자 및 대리인(이하 “신고인등”이라 한다)에게도 적용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및 참석
2.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상담창구의 설치 및 운영
3.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근절 의지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행위자 무관용 원칙 천명
6. 소속 구성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홍보
7.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관련 예산 확보

8.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실태와 예방교육 만족도 조사 정례화 등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9.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관련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산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2. 구의 사무위탁기관(구의 위탁사무에 한한다)
3. 구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②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행위자 및 2차 피해를 입힌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기관장이거나 임원급에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해당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지체 없이 구로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구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한다. 다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행위자 및 2차 피해를 입힌 사람이 기관장이나 임원급에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도 피해자 또는 신고인등이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구로 조사를 이관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6조(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상급자”라 한다)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 발생 사실을 알게된 경우 즉시 피해자에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상급자는 고충처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고충처리 종료 후에도 2차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상급자는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등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1. 고충처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
2. 구성원들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예방을 위한 조치
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제7조(구성원의 책무) 소속기관 구성원(성희롱·성폭력·스토킹 행위자 본인을 포함한다)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3.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7. 피해자 및 신고인등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행위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행위

제8조(예방교육) ①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이하 이 조에서 “예방교육”이라 한다)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연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행위자 및 2차 피해를 입힌 사람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과 발생 시 대처방안
6. 그 밖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예방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고위직 관리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예방교육의 내용을 인터넷사이트 등에 항상 게시하여 소속기관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9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업무 처리와 소속기관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과 처리를 위해 총무과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고충상담창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명 이상 지정하되 남성과 여성 공무원이 반드시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의·조정
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4.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와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등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에 따른 사이버신고창구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게시판과 게시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사이버신고창구) ①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신

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버신고창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이버신고창구 운영을 소속기관 구성원들에게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구청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관련 상담과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지정된 고충상담원은 관련 전문교육을 고충상담원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충상담창구와 제10조에 따른 사이버신고창구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고충상담) ①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대리인, 목격자 등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원에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신청 받은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요청한 보호조치 및 피해방지조치의 이행을 점검하고, 피해자 상담 후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 ①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서면 또는 온라인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 조사 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를 고충상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감사담당관에게 이를 전달하고, 감사담당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에 대한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이를 병합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관은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행위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일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⑤ 감사담당관 또는 조사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하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행위자 및 2차 피해를 입힌 사람을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행위자나 2차 피해를 입힌 사람을 동석시키는 행위
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9. 정당한 이유 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행위

⑥ 피해자가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가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의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분명하게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⑧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 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⑨ 감사담당관은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14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감사담당관은 제13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조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피해자 등의 보호 및 비밀유지) ① 구청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 또는 신고인등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2차 피해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간 동안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휴가 또는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행위자와의 업무와 공간을 분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의 치료와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며, 성희롱·성폭력·스토킹이 발생한 소속 기관·부서의 2차 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④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안의 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및 감사담당관, 총무과장과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방지 관련 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제14조에 따른 감사담당관의 조사 결과에 대한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의 판단
2.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조치의 적정 여부
3.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방향 결정
4.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제13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해야 한다.

제19조(징계) ①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해당 관련자에 대해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할 수 있으며, 제15조제2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 또는 제15조제4항에 따른 비밀유지 불이행으로 발생한 추가 피해에 대해서도 해당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조사 중인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를 저지른 사람의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 등의 처리 후에는 그 결과를 피해당사자에게 서면이나 온라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한다.

②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예방교육 및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행위자 및 2차 피해 가해자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건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식조사 또는 조직문화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한다.

1. 2차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

2. 2차 피해 행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
3. 1년에 여러 건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청인		고충 내용	처리결과	회신일자	확인	
		성명	소속 부서				고충 상담원	감사 담당관

성희롱 · 성폭력 · 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 조사 신청서

접수일	20 . . .		담당자	(서명)	
당사자	신청인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대리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		소속	
		직급		성별	
	피신청인 (행위자)	성명		소속	
		직급		성별	
고충 (신청내용)	※ 6하원칙에 따라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요구사항	1. 가해 행위의 중지() 2. 공개사과() 3. 징계 등 인사조치() 4. 기타()				
처리결과					
위 신청인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조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					

1. 개정이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스톱킹 방지를 위한 예방지침 마련을 의무화하고, 관련 규정에 맞게 일부 문구 현행화 및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양천구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으로 제명을 개정함.
- 나. 스톱킹 예방 및 방지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 다. 스톱킹 관련 정의 규정을 신설함.(제2조)
- 라.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제8조)
- 마. 사이버신고 창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제10조)
- 바. 고충처리 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제11조)
- 사. 피해자 등의 보호 및 비밀유지 사항 용어를 개정함.(제15조)

공 고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5-2296호

**염창역(목동 523-45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재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4-2123호(2024.11.28.)로 공람공고한 염창역(목동 523-45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2025년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2025.11.05.) 심의 결과(수정가결)에 따라 당초 공람공고한 정비계획 결정(안)의 변경사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람공고 합니다.
2. 본 공람공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18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 I. 공람기간 : 2025. 12. 18.(목) ~ 2026. 01. 19.(월)
- II. 공람장소 : 양천구청 6층 도시계획과(☎ 02-2620-3511)
- III. 의견제출 :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
- IV. 공람내용 : 염창역(양천구 목동 523-45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V.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염창역(목동 523-45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사업

나. 정비사업의 위치 및 면적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	염창역(목동 523-45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양천구 목동 523-45번지 일대	-	증) 12,382.6	12,382.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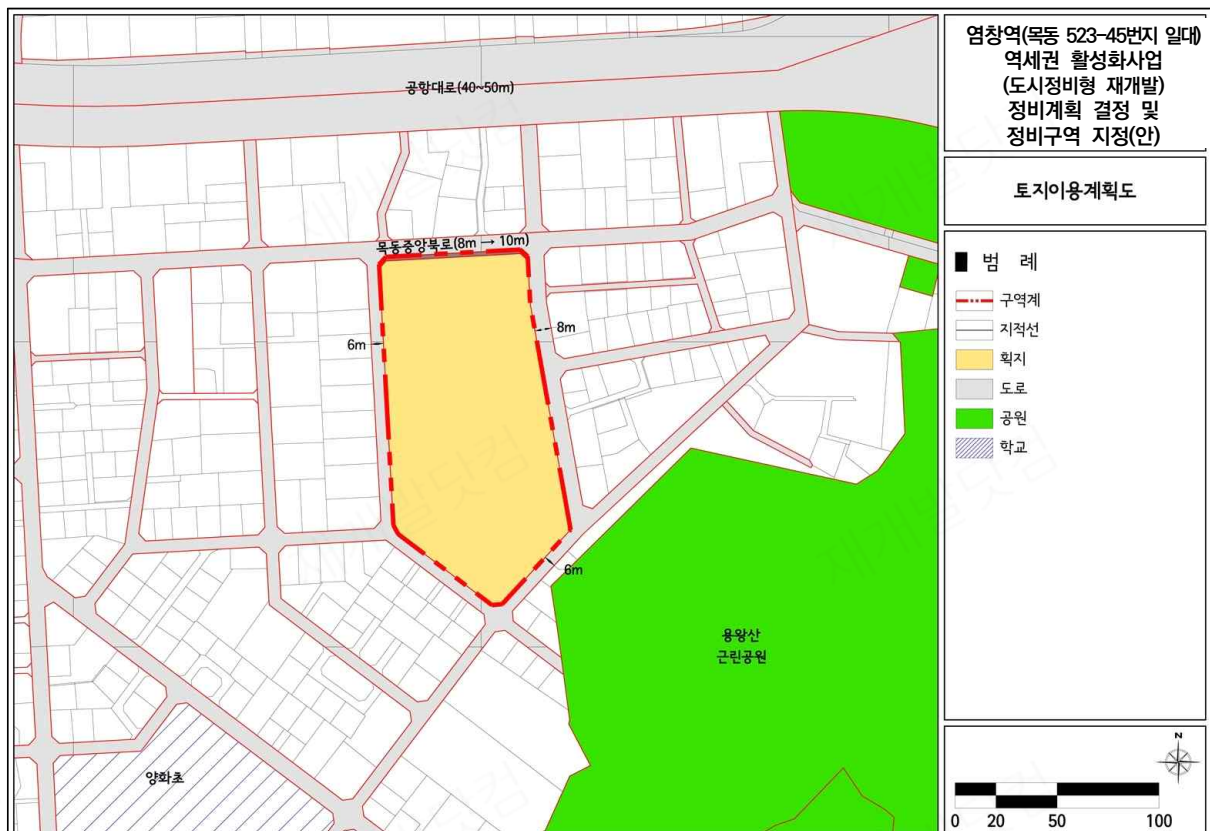
다. 정비구역 지정 사유 :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따른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시행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VI.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안)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12,382.6	100.0	-
정비기반시설	도 로	146.0	1.2	-
획 지		12,236.6	98.8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 토지이용계획도 〉



나. 용도지역·용도지구에 관한 계획(안)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m ²)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2,382.6	-	12,382.6	100.0	-
주거지역	소 계	12,382.6	-	12,382.6	100.0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12,382.6	감) 12,236.6	146.0	1.2	-
	준주거지역	-	증) 12,236.6	12,236.6	98.8	-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적(m ²)		면적 (m ²)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양천구 목동 523-45 번지 일대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준주거지역	12,236.6	염창역(목동 523-45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2)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 해당없음

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결정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폐지	소로	-	-	3~4	기타 도로	-	-	-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	-	8	기타 도로	-	-	-	일반 도로	-	-	목동중앙북로 (구역 내 2m 확폭)
변경	소로	-	-	8~10	기타 도로	-	-	-	일반 도로	-	-	

■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	소로 폐지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에 따른 대상지 내 현황도로 폐지
소로	소로	소로 확폭	지역활성화촉의 장기적인 도로 확폭 가능성을 위한 선제적 도로 확폭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관리사무실	획지	75.00m ²	10m ² +(414세대-50)×0.05m ² = 28.20m ² 이상
합계		1,934.00m ²	414세대 × 2.5m ² × 1.25 = 1,293.75m ² 이상
경로당		84.00m ²	-
어린이집		150.00m ²	-
작은도서관		150.00m ²	-
주민운동시설		950.00m ²	-
어린이놀이터		600.00m ²	-

※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건축법」 등 관련법령 기준 적용

마.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위치	정비 개량 계획(동)				
	명칭	면적(m ²)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설	염창역(목동 523-45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12,382.6	양천구 목동 523-45번지 일대	51	-	-	51	-

바. 건축물에 관한 계획

1)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최고 층수)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기준 (허용)	상한																														
신설	염창역(목동 523-45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 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12,382.6	획지	12,236.6	목동 523-45 번지 일대	공동주택, 근린생활 시설 등	60.0 이하	200.0 이하	317.0 이하	75m 이하 (최고24층)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공급계획 : 414세대 (공공주택 포함) ◦ 건립규모 및 비율(전용면적 기준)																																				
			<table><tr><th colspan="2">구 분</th><th>세대수</th><th>비율(%)</th><th>비 고</th></tr><tr><td colspan="2">합 계</td><td>414</td><td>100.0</td><td>공공주택 87세대 포함</td></tr><tr><td rowspan="3">85㎡ 이하</td><td>소 계</td><td>414</td><td>100.0</td><td>-</td></tr><tr><td>60㎡ 미만</td><td>264</td><td>63.8</td><td>공공주택 66세대 포함</td></tr><tr><td>60~85㎡ 이하</td><td>150</td><td>36.2</td><td>공공주택 21세대 포함</td></tr><tr><td colspan="2">85㎡ 초과</td><td>-</td><td>-</td><td>-</td></tr></table>				구 분		세대수	비율(%)	비 고	합 계		414	100.0	공공주택 87세대 포함	85㎡ 이하	소 계	414	100.0	-	60㎡ 미만	264	63.8	공공주택 66세대 포함	60~85㎡ 이하	150	36.2	공공주택 21세대 포함	85㎡ 초과		-	-	-					
			구 분		세대수	비율(%)	비 고																																
			합 계		414	100.0	공공주택 87세대 포함																																
			85㎡ 이하	소 계	414	100.0	-																																
				60㎡ 미만	264	63.8	공공주택 66세대 포함																																
				60~85㎡ 이하	150	36.2	공공주택 21세대 포함																																
			85㎡ 초과		-	-	-																																
			- 85㎡ 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세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100.0%																																				
			- 임대주택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15% 이상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 이상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 40㎡이하																																							
◦ 공공주택 건설계획(전용면적 기준)																																							
<table><tr><th colspan="2" rowspan="2">구 분</th><th colspan="3">공공주택(세대수)</th><th rowspan="2">비율(%)</th></tr><tr><th>소계</th><th>재개발의무</th><th>역세권 활성화사업</th></tr><tr><td colspan="2">합 계</td><td>87</td><td>54</td><td>33</td><td>100.0</td></tr><tr><td rowspan="3">85㎡ 이하</td><td>40㎡ 미만</td><td>21</td><td>21</td><td>-</td><td>24.1</td></tr><tr><td>40~60㎡ 미만</td><td>45</td><td>24</td><td>21</td><td>51.7</td></tr><tr><td>60~85㎡ 이하</td><td>21</td><td>9</td><td>12</td><td>24.1</td></tr></table>						구 분		공공주택(세대수)			비율(%)	소계	재개발의무	역세권 활성화사업	합 계		87	54	33	100.0	85㎡ 이하	40㎡ 미만	21	21	-	24.1	40~60㎡ 미만	45	24	21	51.7	60~85㎡ 이하	21	9	12	24.1			
구 분		공공주택(세대수)			비율(%)																																		
		소계	재개발의무	역세권 활성화사업																																			
합 계		87	54	33	100.0																																		
85㎡ 이하	40㎡ 미만	21	21	-	24.1																																		
	40~60㎡ 미만	45	24	21	51.7																																		
	60~85㎡ 이하	21	9	12	24.1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조정될 수 있음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 대지경계로부터 3m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후퇴구간은 보도형 전면공지 조성																																				
심의완화사항			◦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3-3-6)」에 따른 1.2배 이내 최고높이 완화 (70.9m 이하 → 75m 이하 완화 ※약 1.06배)																																				

2) 용적률 및 공공기여 계획

■ 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변경	기준(허용)용적률	계획용적률	비고
제2종(7층) → 준주거	200% 이하	317% 이하	◦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으로 용적률 변경함

■ 공공기여 계획

용도지역 상향 면적(m ²)	공공기여율		공공기여 면적 (m ²)		공공기여율 (%)
	비율 (부지환산 시)	증가용적률의 50%			
12,236.6m ²	18.5%	58.5% (117%×1/2)	기준	2,258.2m ² (58.5%/317.0%×12,236.6m ²)	18.5%
			계획	2,259.6m ²	18.5% (2,259.6m ² /12,236.6m ²)

※ 공공기여 면적은 용도지역 상향 면적(획지면적)에 대한 공공기여량을 말함

※ 계획 면적(2,259.6m²)은 획지 내 용도폐지 되는 기반시설 국공유지 면적을 제외한 순부담
면적으로 기재함

[세부 공공기여 계획]

구분		총 면적 (m ²)	순부담율 (%)	토지 (m ²)	대지지분 (m ²)	건축물 (m ²)	연면적 (m ²)	비고 (관리청)
합계		3,422.6	28.0	97.3	1,680.9	1,644.4	-	-
도로		97.3	0.8	97.3	-	-	-	도로 2m 확폭 : 146.0m ² (가중치 적용)
공공임대주택		931.6	7.6	-	931.6	-	2,966.64 (공급)	-
지역 필요 시설	공공 지원시설	1,073.0	8.8	-	335.9	737.1	1,667.66 (계약)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
	공공청사	1,320.6	10.8	-	413.4	907.2	2,052.50 (계약)	양천구 (교육과)

■ 세부 공공기여 면적 산정

구 분		산정내용					
토지이용 계획		합계 (구역면적)	획지 (공동주택 등)	① 신설 정비기반시설 (토지)	② 기반시설등 (대지지분 및 환산부지면적)	③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면적	④ 획지 내 용도폐지 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면적
		12,382.6	12,236.6	97.3	3,325.2	-	1,163.0
공공시설 부지등 제공면적 (순부담)		◦ 공공시설 부지등 제공면적(순부담 면적) = ①+②-③-④ = 97.3㎡ + 3,325.2㎡ - 1,163.0㎡ = 2,259.6㎡ (18.5%)					
①신설 정비기반시설 (토지)		◦ 도로 : 97.3㎡ = 순부담면적×(용도지역별 허용용적률÷사업부지 허용용적률) ※가중치 적용 = 146.0㎡×(200%÷300%) = 97.3㎡					
②-1 지역필요 시설 (대지지 분및 환산부지 면적)	기반시설 (공공청사)	◦ 대지지분 : 413.4㎡ = 획지면적×(제공(계약)연면적÷전체연면적) = 12,236.6㎡×(2,052.50㎡÷60,756.20㎡) = 413.4㎡ ◦ 건축물 환산면적 : 907.2㎡ = (설치비용×제공(계약)연면적)÷부지가액 지상 : (4,423,000원/1.1/㎡×1,600.00㎡)÷(3,777,767원×2) = 851.5㎡ 지하 : (1,024,000원/1.1/㎡×452.50㎡)÷(3,777,767원×2) = 55.8㎡					
	공공시설등 (공공지원 시설)	◦ 대지지분 : 335.9㎡ = 획지면적×(제공(계약)연면적÷전체연면적) = 12,236.6㎡×(1,667.66㎡÷60,756.20㎡) = 335.9㎡ ◦ 건축물 환산면적 : 737.1㎡ = (설치비용×제공(계약)연면적)÷부지가액 지상 : (4,423,000원/1.1/㎡×1,300.00㎡)÷(3,777,767원×2) = 691.8㎡ 지하 : (1,024,000원/1.1/㎡×367.66㎡)÷(3,777,767원×2) = 45.3㎡					
②-2 공공시설등 (공공임대주택)		◦ 대지지분 : 931.6㎡ = 획지면적×(주거(계약)연면적÷전체연면적)×(임대공급연면적/주거공급연면적) = 12,236.6㎡×{(56,411.70㎡÷60,756.20㎡)×(2,966.64㎡÷36,179.90㎡)}=931.6㎡ ※전용 49㎡ 6세대, 전용 59㎡ 15세대, 전용 84㎡ 12세대					

※ 공공건축물 등 설치비용 산정근거 (10% 부가세 제외 후 산정)

- 공공지원시설 : 공공업무사무소,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2024)
- 공공청사 : 공공업무사무소,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2024)
- 지하(복합건축물 내 주차장)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 건축비 및 가산비용(2025) 중 지하층 공사비

※ 부지가액 : 평균공시지가의 2배 {(필지별 공시지가×면적)의 합÷구역면적}

VII. 염창역(목동 523-45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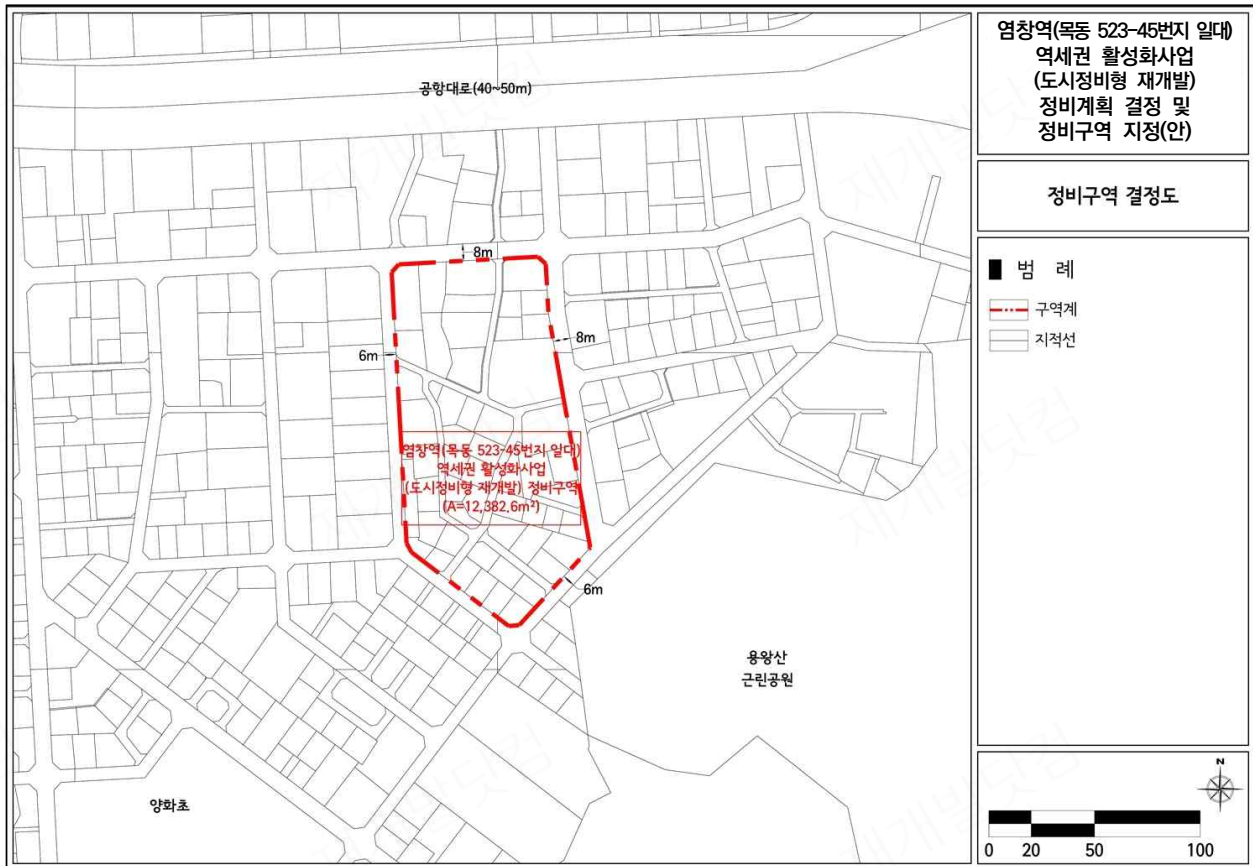
※ 관계도서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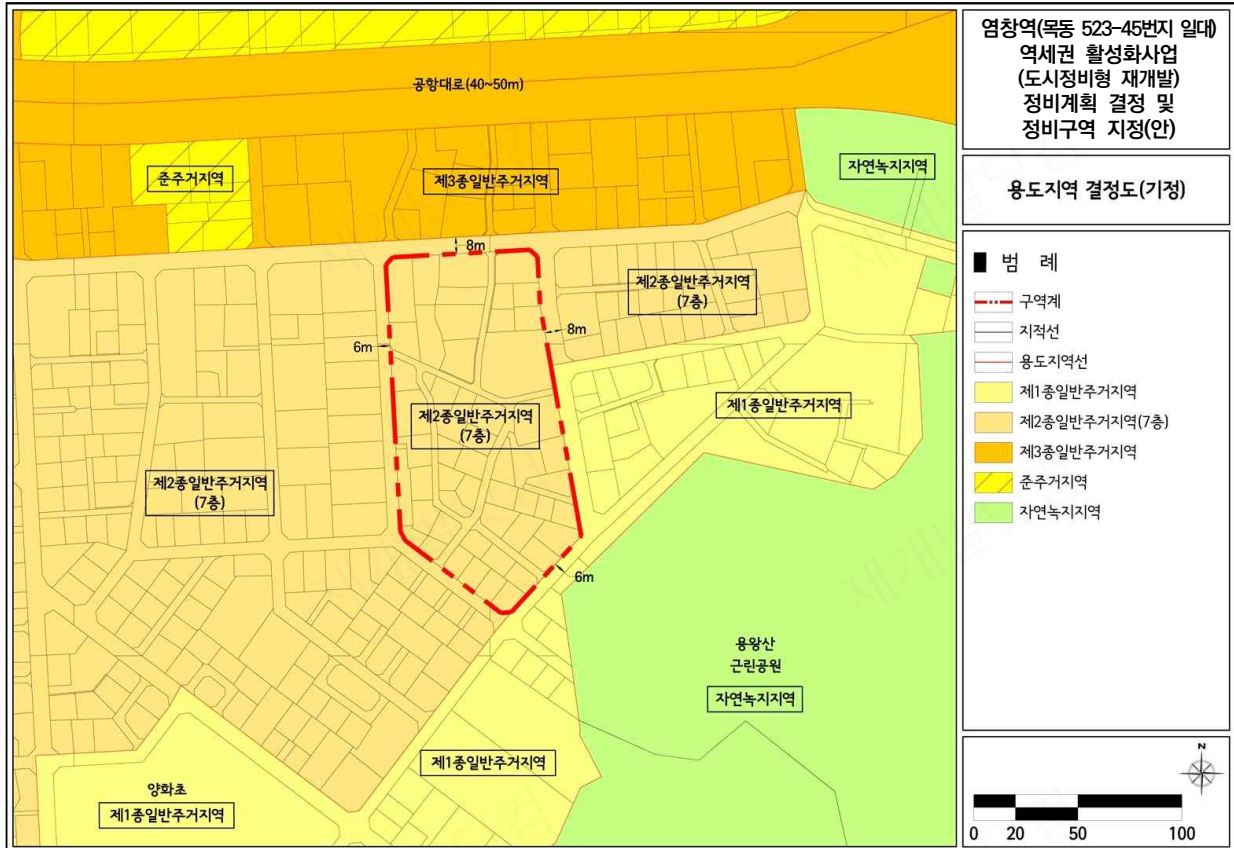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목동 523-45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관계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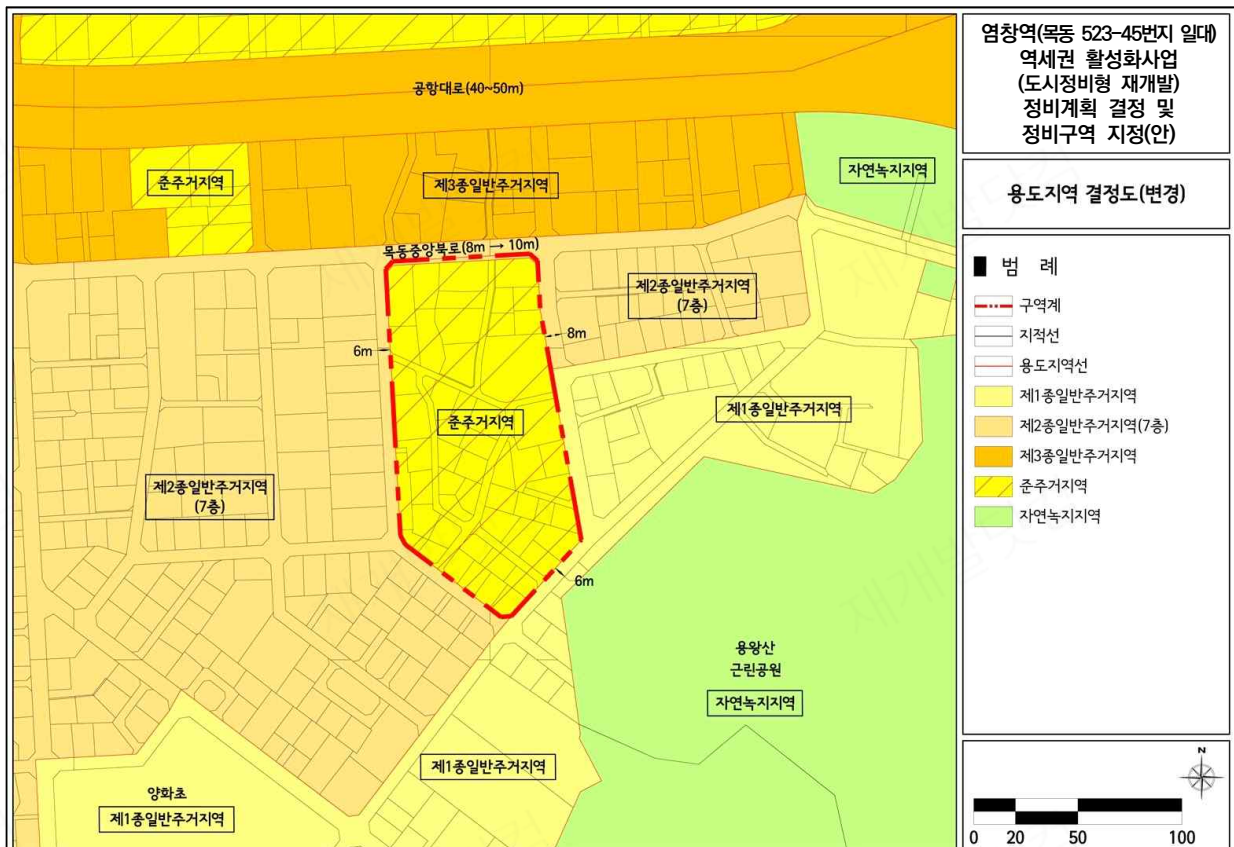
■ 정비구역 결정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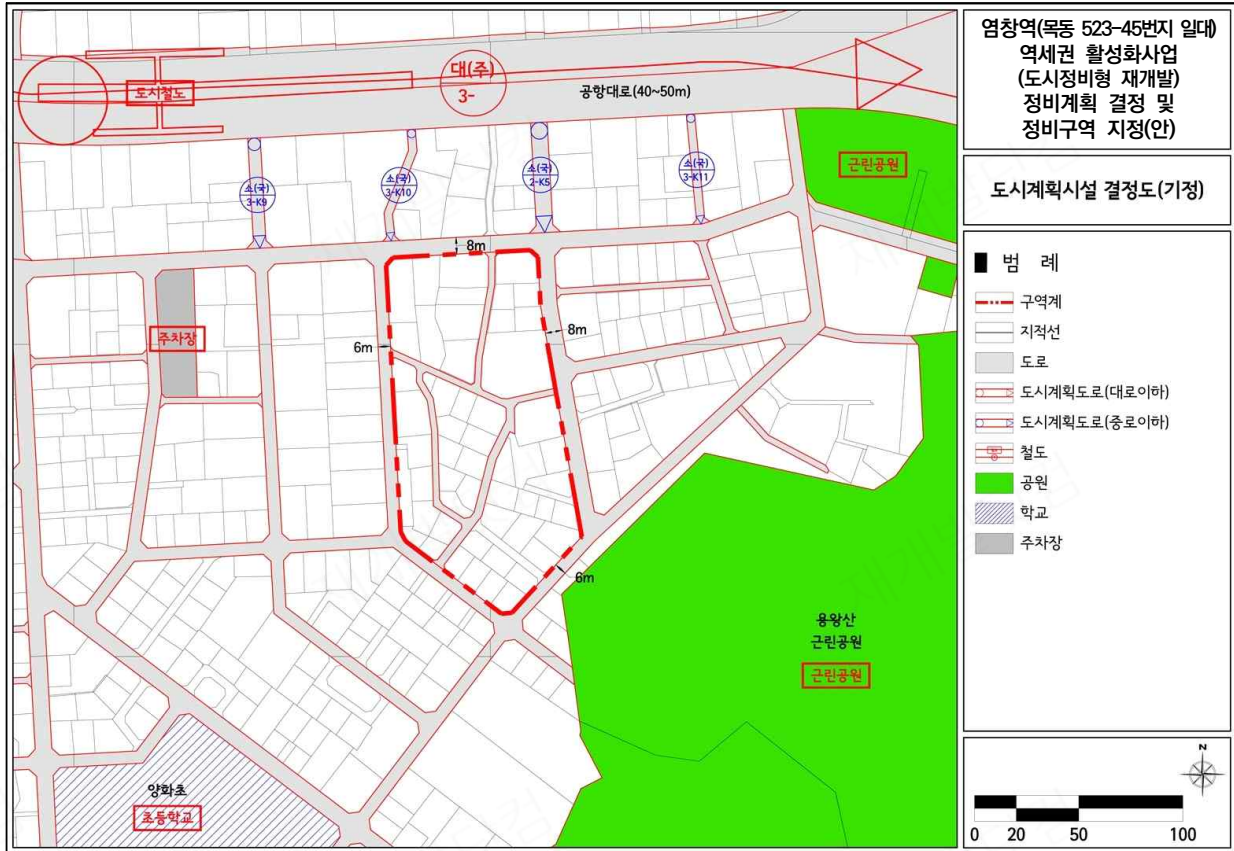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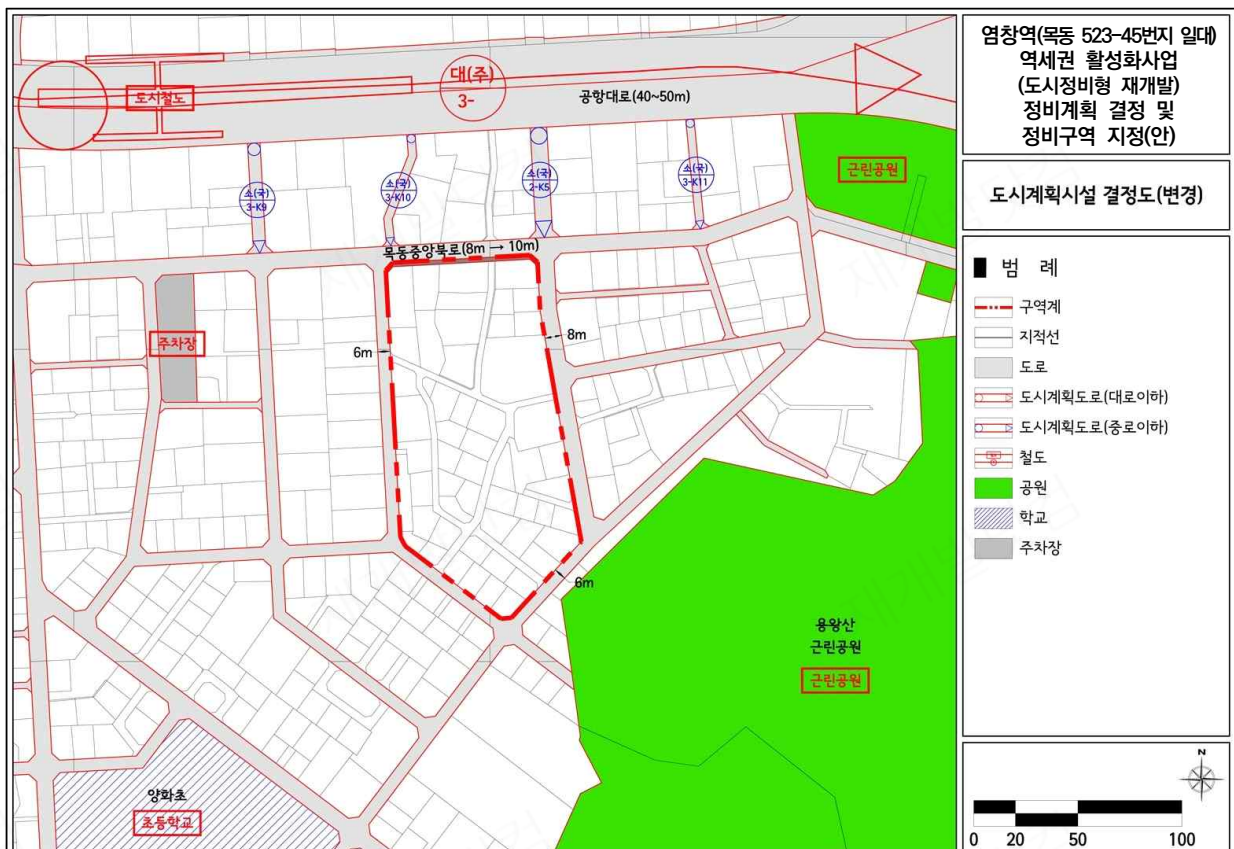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안)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안)



■ 정비계획 결정도(안)

